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4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을 “방역기준·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 로 하고, “통지하여야” 를 “통지해야” 로 한다.

별표 1의10 제1호가목 본문 및 단서 중 “입구” 를 각각 “각 입구” 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이동식 고압분무기” 를 “고압분무기(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2) 중 “소독시설” 을 각각 “소독설비” 로 하고, 같은 목 (3) 표 외의 부분 중 “닭(산란계, 육계)·오리” 를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로 하며, 같은 목 (3) 중 “소독시설” 을 “소독설비” 로 하고, 같은 목 (3)의 소독설비란(종전의 소독시설란) (가) 중 “차량 출입구” 를 “차량의 각 출입구” 로, “소독” 을 “세척·소독” 으로, “장치” 를 “고압분무기” 로 하며, 같은 란 (나) 중 “닭·오리” 를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로,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을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集卵室: 수작업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알을 모으는 곳)” 로 하고, 같은 란 (다) 중 “출입구” 를 “각 출입구” 로,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을 “소독설비” 로 하며, 같은 란 (라) 중 “출입기록부” 를 “농장의 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 로 하고, 같은 란 (마) 중 “방문차량” 을 “방문차량의 각 출입구에” 로 하며, 같은 란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농장 외부에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란 (가) 본문 중 “출입구” 를 “각 출입구” 로 하고, 같은 란 (나) 중 “입구” 를 “각 출입구” 로 하며, 같은 란 (다) 본문 중 “출입문” 을 “각 출입문” 으로 하고, 같은 란 (다) 단서 중 “출입” 을 “사람 및 차량의 출입” 으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란 (바)1) 및 2)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란 (바)1) 본문 중 “닭·오리” 를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로, “축사 입구” 를

“사육시설 출입구” 로 하며, 같은 란 (바)1)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란 (바)2) 본문 중 “기후” 를 “기상여건” 으로, “실내 공간” 을 “사육시설안과 연결된 실내 공간” 으로, “닭·오리” 를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로 하며, 같은 란 (바)2)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란 (바)에 3)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4)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갖추어 둘 것
- 5) 전실 내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란 (사) 중 “닭·오리” 를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로, “배수구” 를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로 하고, 같은 란 (사)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비장의 분노운반차량의 출입구에 차단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차단망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란 (아)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다른 장소의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동시에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자)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운송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같은 호 마목,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 같은 호 아목(1) 및 같은 목 (2) 중 “소독시설” 을 각각 “소독설비” 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아목(2)의 방역시설란 (나) 단서 중 “출입” 을 “사람 및 차량의 출입” 로 하고, 같은 호 자목 표 외의 부분 중 “정액 등 처리업자” 를 “정액등처리업자” 로 하며,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호 차목 중 “소독시설” 을 각각 “소독설비” 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차목 방역시설란 (2) 단서 중 “출입” 을 “사람 및 차량의 출입” 로 하고, 같은 란 (8) 중 “임상증상” 을 “임상증상, 부화용 알과 난좌에 대한 소독실시” 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소독시설” 을 “소독설비” 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위에서 규정한 소독설비 외에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위의 소독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2 제19호의 등록대상 차량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란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가.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나.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별표 2의4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은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의4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해당 운송벨트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해야 한다.

별표 2의4 제4호카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중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난좌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세척·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에는 1회용 난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 마다 세척·소독해야 하고,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도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해야 한다.

마. 가축 사육 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세척·소독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외부에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반입창고 등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보관하거나 오염방지에 적합한 덮개 등으로 외부와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바.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사육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부화장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2의4 제4호사목(중전의 라목) 중 “청소·소독하여야한다”를 “청소·소독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타목(중전의 자목) 중 “별표 3의3”을 “별표 3의4”로 하며, 파목(중전의 차목) 중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를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1)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4 제4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에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를 입식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역교육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경우의 교육 및 점검 결과의 통지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닭·오리·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차목 방역시설란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별표 2의2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 사육업에 적용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칠면조·거위·타조·메추리·꿩·기러기 사육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차량에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시설은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닭·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알을 취급할 때 원칙적으로 1회용 난좌(卵座)*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의 알을 운반·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